

군포시의회 공고 제2022 - 26호

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13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2년 7월 17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55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gim72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

(김귀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2. 7. .

발 의 자 : 김귀근, 이길호, 신경원,
신금자, 이우천, 이훈미,
이동한, 박상현, 이혜승

1. 제안이유

-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에서 제2조)
- 나. 책무 (안 제3조)
- 다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(안 제4조)
- 라.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·구성·운영 등 (안 제6조~12조)
- 마. 학교환경교육의 지원(안 제13조)
- 바. 사회·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(안 제14조~15조)
- 사. 환경교육센터 설치·운영·지원(안 제16조~18조)
- 아. 환경교육 정보망(안 제19조)

3. 관련법령

-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군포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교육”이란 군포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·기능·태도·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2. “학교환경교육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·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.
 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3. “사회환경교육”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군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며,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.

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(이하 “시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환경교육의 추진목표, 추진전략 및 방향
2. 학교·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
3.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
4.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 또는 기금의 설립 및 운영
5.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
6. 민간이 운영하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
7. 시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
8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경기도군포의왕

교육지원청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고, 제6조에 따른 군포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. 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.

④ 시장은 시 계획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의견 청취) ① 시장은 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,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환경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4. 환경교육의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
5.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문
6.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7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

함하여,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 공동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,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련 담당국장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
2.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
3. 환경 관련 기사 이상의 국가 자격을 갖추고 환경교육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해외출장,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
4.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

5.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공동위원장의 직무)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회의는 공동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공동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1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는 시 환경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환경교육 담당팀장이 된다.

③ 간사는 안전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

할 수 있다.

제13조(학교환경교육의 지원)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4.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5.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
6.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7.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8.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
9.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공공기관, 기업, 사회단체 등의 사회·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
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
4.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
5.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
6.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조(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)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,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때 성별·연령별·직종별·시기별 분리 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6조(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환경교육센터(이하 “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.)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개발, 보급 및 지원
2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
3.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
4.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

5.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
6.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
7.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·협력
8.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17조(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「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8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(또는 기금)의 설립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·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

2.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

3.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

⑤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·연령별·직종별·시기별 분리 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9조(환경교육 정보망)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·정보의 원활한 생산·보급 등을 위하여 군포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20조(백서 및 우수사례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군포시 환경교육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·기관별·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「군포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